

2024년 화성시 동탄 도시형 소공인 협의회

정회원 모집 공고

화성시 동탄, 동부지역 소공인 간 화합과 협업을 위해 창립된 화성시 동탄 도시형 소공인 협의회의 정회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2. 27.

□ 협의회 개요

○ 목 적 : 본 협의회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소공인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제반 활동을 진행하고, 회원사간의 정보교류와 기술적 협업을 통하여 본 협의회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 업 :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준한 도시형 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한 활동 및 처우 개선 등의 제반 활동
2. 본 협의회 회원사 소공인의 경영 및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공유
3. 본 협의회 회원사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로 사업 및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 간 매칭 활동
4. 본 협의회 회원사들의 애로사항 및 관심사항을 종합하여 정부기관/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사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5. 본 협의회 회원사들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증대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지원방안 건의
6.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봉사 활동 전개
7. 기타 본 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공익사업과 영리수익사업 등의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정회원 모집 개요

- 모집인원 : ○○명 (항시 모집)
- 모집지역 : 화성시 동탄1~8동, 병점1~2동, 반정동, 진안동, 기산동, 반월동
- 모집대상 : 모집지역 內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소공인 대표
- 모집업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업 종	상시근로자 수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위 “1” 외의 업종	5명 미만

*요식업, 숙박업, 사행성 업종 등 제외

- 회 비 : 연간 30만원 *입회 날짜기준

□ 정회원 가입 혜택

- 동탄/동부지역 소공인 전용 협의회 홈페이지 운영
 - 1) 소공인 회원사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
 - 2) 공동협력사업 제안/문의
- 소공인 전용 엑스퍼트 공간
 - 1) 협의회 회원사 간 컨설턴트 (기술, 행정 등)
 - 2) 협의회 제휴 전문가 컨설팅 제공 (특허, 회계, 세무, 법률 등)
- 정부기관/지자체/단체 지원사업 공유
 - 1) 소공인 관련 교육 및 지원사업 공유
 - 2) 회원사 간 공동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책 제안, 협의
- (사)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 공동기반시설 이용 지원
 - 1)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가공 (가공 5축 MCT, 선반, 밀링 등)
 - 2) 제품 개발을 위한 공동장비활용 (레이저용접, CNC 선반 등)

□ 가입 방법 및 문의

○ 가입 문의 : hsc-dongtan@naver.com (재무 정은열, 간사 이재환)

○ 가입 신청 : 화성시동탄도시형소공인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1. 홈페이지 접속 (<https://hsc-dongtan.com/>)

2. 홈페이지 회원 가입

-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 준회원으로 회비 없음

회원 구분	회 비	차 이
일반회원	없 음	협의회 정보 접근 제한, 제휴 서비스 X
정회원	연 30만원	협의회 모든 정보 및 제휴 서비스 활용

3. 홈페이지 상단 회원사 메뉴 → 회원 가입 안내 확인

○ 회비 입금 계좌

1. 우리은행 1005-804-552933 (화성시동탄도시형소공인협회)

□ 별 첨 (있음)

화성시 동탄 도시형 소공인 협의회



□ 별 첨 (정회원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 명칭은 “화성시 동탄 도시형 소공인 협의회“ (이하 '본회'라 한 다)로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소공인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제반 활동을 진행하고 회원 사간의 정보교류와 기술적 협업을 통하여 본회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015호, 2022.10.18. 개정]에 준한 도시형 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한 활동 및 처우 개선 등의 제반 활동
2. 본회 회원사 소공인들의 경영 및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공유
3. 본회 회원사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로 사업 및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간 매칭 활동
4. 본회 회원사들의 애로사항 및 관심사항을 종합하여 정부기관/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사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5. 본회 회원사들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증대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지원방안 건의
6.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봉사 활동 전개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공익사업과 영리 수익 사업 등의 플랫폼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본회의 창립회원 또는 경기도 화성시 소공인 또는 본회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본회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써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본회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 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각종 회비의 납부
4. 각종 회의와 행사의 참석
5. 본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

제7조 (회비) 정회원은 협회 운영을 위해 매년 (입회 날짜기준) 300,000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8조 (탈퇴) 회원의 탈퇴에 대한 규정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탈퇴 된다.
 - 회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제명된 경우
3. 회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탈퇴한 경우에는 기 납입한 회비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회원 탈퇴 시 3년간 회원자격을 취득 할 수 없다.

제9조 (자격의 상실)

1.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에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① 각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②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③ 본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 ④ 연속 2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⑤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한 경우
2. 제명당한 경우 당해 회원의 본 회와 관련된 모든 권리는 상실한 것으로 한다.
3. 제명 회원은 영구제명으로 입회할 수 없다.